

International SOS의 제공업체 행동강령

International SOS는 우리가 이룩한 성실성과 사업적 성공에 대한 평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 행동강령은 모든 제공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International SOS는 모든 제공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문서는 International SOS 행동강령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검토를 위해 요청할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는 본 행동강령이 조직 내 전체에 전달되어 전 직원이 본 행동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제공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제공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

“*International SOS*”는 International SOS Pte. Ltd.와 이 회사의 계열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계열사”는 International SOS를 지배하거나 International SOS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International SOS의 일반적 지배 하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지배”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으로 해당 사람이나 법인의 경영 및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결권이나 기타 권리 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본금(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기타 지분) 중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은 International SOS의 제공업체 행동강령을 의미합니다.

“*제공업체*”는 현재 및 미래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에이전트 및 기타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1. 부패방지 준법

각국 정부의 법률 및 윤리 정책을 준수하려는 International SOS의 노력은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회사 정책,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세계 각국의 유사한 부패방지 법률에 따르면 우리 회사 직원이나 에이전트는 공무원(즉, 정부 직원이나 정부 소유의 또는 국영 기업, 공사 또는 법인의 직원)을 움직여서 정부 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사업권을 획득, 유지 또는 부적절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현금 여부를 떠나 금품 또는 가치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나 기타 업체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S 기업은 뇌물, 불법 리베이트

또는 기타 유사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금품을 통해 우리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법률 준수

제공업체의 직원 및 업무절차는 각국의 법률과 기타 모든 현행 법규 및 기타 법률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든 현행 국제통상규정 법률, 규정, 규제 및 기타 법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 또는 International SOS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는 현행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 조직, 법인 또는 기업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3. 기밀/독점 정보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지적재산,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정보, 독점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International SOS와의 계약에 따른 경우 및 International SOS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정보가 제공업체의 과실없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International SOS 기밀정보 또는 독점정보와 관련된 제공업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엄격히 “알아야 할 필요” 또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업체 조직 내의 다른 사람에게 위의 정보 유출 금지
- 제공업체 조직의 외부 사람에게 위의 정보 유출 금지
- 제공업체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위의 정보 사용 금지

4.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를 대신하여 취급하는 개인 데이터의 무단 유출, 접근, 사용 및 수정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현행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직원, 하도급업체, 벤더 및 회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안전조치를 도입하여 International SOS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모든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의 제공업체 행동강령

5. 윤리적 거래

고객 및 제공업체와의 윤리적 거래는 건전한 비즈니스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International SOS는 모든 제공업체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공업체의 신뢰성과 성실성은 물론이고 가격, 품질 및 서비스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송장, 대금결제 및 보고서는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공업체는 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수준의 윤리 기준을 보이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모든 비즈니스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6. 선물 및 향응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 직원은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선물, 금품 또는 기타 특혜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 직원에게 어떠한 선물이나 기타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일부 제공업체, 고객 및 기타 협력업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가끔 작은 선물이나 업무상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이나 접대 행위가 직원의 업무상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와 거래하거나 International SOS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i) 기타 제공업체, International SOS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게 선물 또는 접대 제공 또는 (ii)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선물 또는 접대 수락, 단, 해당 선물 또는 접대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이 없을 것
- 뇌물, 불법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불법 금품이 아닐 것
- 대가성이 아닐 것
- 선물 제공자가 특별 우대나 사업권 획득, 더 좋은 가격 또는 판매 조건 개선이라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비춰지지(또는 실제적이거나 함축적 의무) 말 것.

7. 건강 및 안전

International SOS와 거래하는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기준에 준하는 건강 및 안전을 중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International SOS 시설에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 파견 근로자는 International SOS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마약, 음주 및 기타 금지 물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업체가 비리 혐의를 조사 및 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제공업체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또는 International SOS에 제공하는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기타 나쁜 평판 또는 International SOS에 부정적이거나 기타 나쁜 평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공업체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의 직원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반의 심각성 및 특정 상황에 따라 제공업체와 관계가 종료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S 제공업체 행동강령의 온라인 버전은 <https://www.internationalsos.com/terms-and-conditions>에서 추가 언어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Compliance@internationalsos.com 으로 연락하십시오.